

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2023. 6. 22(목) 10:00

제244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심사안건

검 토 보 고 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푸른미래도시국 소관)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추병수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 토 보 고

I. 제안경위

- 가. 의안번호 : 제2325호
- 나. 제 출 자 : 금천구청장
- 다. 제출일자 : 2023. 5. 31.
- 라. 회부일자 : 2023. 5. 31.

II.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제150조,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금천구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금천구의회 의 승인을 받고자 함.

III. 참고사항

○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제150조,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

○ 관련서류 : 2022회계연도 결산서(안)

IV. 푸른미래도시국 결산

1. 푸른미래도시국 결산 총괄

가. 세입 총괄

(단위:원)

구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A)	세입결산액(B)	징수율 (B/A)
계	9,528,060,000	11,325,326,960	10,003,939,790	88.3%
주 택 과	874,682,000	2,139,412,660	1,148,114,470	53.6%
도시계획과		23,771,300	15,289,200	64.3%
주거정비과	694,100,000	843,498,940	843,496,940	99.9%
공원녹지과	7,731,124,000	7,653,455,970	7,637,053,470	99.7%
건축과	228,154,000	665,188,090	359,985,710	54.1%

나. 세출 총괄

(단위:원)

부서명	예산현액(A)	지출액(B)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금액	집행률 (B/A)
계	43,912,866,470	27,949,321,130	14,442,965,140	1,125,693,708	63.6%
주 택 과	568,538,000	417,810,370		142,802,620	73.4%
도시계획과	1,685,091,860	1,199,457,310	426,565,960	50,451,770	71.2%
주거정비과	6,975,325,440	2,343,254,540	4,264,732,180	106,708,233	33.5%
공원녹지과	34,034,444,170	23,482,211,110	9,682,135,000	755,538,885	68.9%
건축과	649,467,000	506,587,800	69,532,000	70,192,200	78%

다. 집행잔액

○ 예산잔액 사유별 현황

(단위:원)

부서명	예산현액	집행잔액	사유별		
			보조금 정산잔액	예산절감액	계획변경등 집행사유미발생
			낙찰차액	지출잔액	예비비
계	48,188,543,550	1,419,872,803	391,346,247		84,110,620
			235,661,250	708,754,686	
주택과	549,788,000	76,793,270	14,320,820		9,328,000
				53,144,450	
도시계획과	2,661,407,700	429,077,527	9,206,947		
			1,750,000	418,120,580	
주거정비과	12,281,703,540	70,007,195	679,350		
				69,327,845	
공원녹지과	32,121,288,310	788,148,041	366,973,840		43,499,030
			233,911,250	143,763,921	
건축과	574,356,000	55,846,770	165,290		31,283,590
				24,397,890	

라. 푸른미래도시국 집행률 저조사업

(단위 : 원)

부서명	세부사업명	예산액(가)	지출액(나)	이월액(다)	집행잔액 (가-나,다)	집행률 (나/가)
주택과	계	128,204,000	15,959,950	0	112,244,050	12%
	동네방네 꿈나무들의 신나는 구정체험	6,120,000	0	0	6,120,000	0%
	주거환경개선사업 지	122,084,000	15,959,950	0	106,124,050	55%
도시계획과	계	1,252,974,000	774,926,440	426,565,960	51,481,600	62%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10,022,000	6,634,500	0	3,387,500	66%
	공공시설 이전부지 활용방안 기본계획 수립	181,512,000	106,512,000	70,000,000	5,000,000	59%
	소규모주택 정비 관리계획(변경)수립 (특교잔액활용)	530,700,000	311,740,000	207,360,000	11,600,000	59%
	금천구심 지구단위 계획 재정비	315,220,000	207,629,240	90,905,960	16,684,800	66%
	빛 공해 방지를 위한 조명관리 강화	3,120,000	2,020,000	0	1,100,000	65%
	금천구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161,200,000	105,191,400	44,800,000	11,208,600	65%
	시흥행궁 역사문화 보존 경관사업	51,200,000	35,199,300	13,500,000	2,500,700	69%
주거정비과	계	6,704,749,940	2,111,200,670	4,250,333,180	343,216,090	31%
	시흥5동 별장길 일대 골목길 재 생사업(성인지)	860,342,000	486,859,880	346,755,000	26,727,120	57%
	금하마을 도시 재생 뉴딜사업	4,539,712,940	1,046,200,190	3,259,971,180	233,541,570	23%
	독산2동 서울형 도시 재생사업	669,767,000	318,171,950	330,000,000	21,595,050	48%
	재개발 정비계 획 수립 용역	492,000,000	166,380,000	289,220,000	36,400,000	34%
	기 본 경 비	77,944,000	52,993,140	0	24,950,860	68%
	반 환 금 기타	64,984,000	40,595,510	24,387,000	1,490	62%
공원녹지과	계	8,648,653,250	820,747,120	7,575,483,250	252,422,880	9%
	베짱이 유아숲 체험원 운영	660,700,000	53,798,260	600,000,000	6,901,740	8%

	송록어린이공원 재 조성 사업	31,000,000	0	29,150,000	1,850,000	0%
	독산3동 다목적 광장재조성사업	900,000,000	0	899,500,000	500,000	0%
	서울형 도시텃밭 관 리 사 업	17,200,000	8,480,000	0	8,720,000	49%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 원 사 업	252,920,000	142,328,000	0	110,592,000	56%
	도 시 농 업 체험센터 운영	712,651,000	140,728,670	498,405,000	73,517,330	19%
	도시농업 공간 조성	190,920,000	91,000,500	99,000,000	919,500	47%
	농지위원회 운영	2,500,000	0	0	2,500,000	0%
	농지이용관리지원	400,000	0	0	400,000	0%
	사회서비스분야 사 회 복 무 요 원 인 력 경 비	16,779,000	8,448,540	0	8,330,460	50%
	호 암 늘 솔 길 연 장 사 업	2,015,109,850	286,838,000	1,700,000,000	28,271,850	14%
	호암산자락 생활 체육 공원 조성	489,234,000	0	489,234,000	0	0%
	개발제한구역 42 관리초소 리모델링 (신 축)	1,142,239,400	35,148,800	1,107,090,600	0	3%
	호암산자락 도시 농업공원 조성	1,087,000,000	4,276,350	1,082,723,650	0	0.4%
	산사태 발생우려 지역 실태조사 및 취약지역 관리 계획 수립 용역	80,000,000	1,200,000	72,000,000	6,800,000	1.5%
	공원내 무장애 숲 길 조 성	50,000,000	0	48,380,000	1,620,000	0%
	산사태 및 계류 복 구 공 사	1,000,000,000	48,500,000	950,000,000	1,500,000	4.8%
건축과	계	194,078,000	107,687,000	69,532,000	16,859,000	55%
	건축물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	149,468,000	87,734,000	45,600,000	16,134,000	59%
	재난취약시설 정밀 안전진단 등 지원	44,610,000	19,953,000	23,932,000	725,000	45%

※ 집행률은 예산액 대비 지출액을 기준으로 산출(집행률 70% 미만 사업)

2. 예산의 전용 : 해당사항 없음

3.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단위: 천원)

구 분	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계	47	14,442,965	28	8,407,011	19	6,035,953
도시계획과	5	426,566			5	426,566
주거정비과	11	4,264,732	4	461,929	7	3,802,803
공원녹지과	29	9,682,135	22	7,875,550	7	1,806,584
건축과	2	69,532	2	69,532	-	-

V. 검토의견

1. 세입·세출 결산

- 2022회계년도 푸른미래도시국 세입결산액은 100억 393만 9천원으로 징수결정 대비 징수률은 88.3%이며, 지출액은 279억 4,932만원이며
- 집행잔액은 11억 2,569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63.6%이며 집행잔액 발생원인은 보조금정산잔액 3억 9,134만원, 낙찰차액 2억 3,566만원, 지출잔액 7억 875만원, 계획변경 등 집행미사유 8,411만원임.

2.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 「지방재정법」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에 따른 푸른미래도시국 소관 이월사업비의 내역을 살펴보면,
 - 명시이월은 총 28건 84억 701만원이 명시이월 되었음.
 - 사고이월은 총 19건 60억 3,595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음.

3. 검토의견

○ 2022회계연도 푸른미래도시국 세입·세출 결산 검토 결과

구 전체 집행률(81%)에 대비 다소 낮게 집행(63.6%)되었으며 공원녹지과 등의 사업에 있어서는 이월사업이 매년 높게 발생하는 것은 사업 계획 및 예산편성 단계에서 과다 계상 또는 성과가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한 보완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봄 따라서, 건전 재정과 효율적 예산 집행을 위해서 예산 심의과정에서 보다 철저한 심사가 요구될 것으로 사료됨

관계법령

☞ 예산·결산 자료

「지방자치법」 [시행 2023. 6. 7.] [법률 제19428호, 2023. 6. 7., 일부개정]

제150조(결산)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명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감사위원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의 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그날부터 5일 이내에 시·도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감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재정법」 [시행 2023. 5. 16.] [법률 제19031호, 2022. 11. 15., 일부개정]

제49조(예산의 전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轉用)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할 수 없다. <신설 2020. 6. 9.>

1.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2. 지방의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전용을 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전용 내역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6. 9.>

- ④ 제1항에 따라 전용한 경비의 금액은 세입·세출결산서에 명시하고, 그 이유를 적어야 한다. <개정 2020. 6. 9.> [전문개정 2011. 8. 4.]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 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 ② 세출예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비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2.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까지 오랜기간이 걸리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3. 공익·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
 4. 정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 ③ 계속비의 회계연도별 소요경비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그 계속비의 사업완성연도까지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 ④ 제1항 부터 제3항까지 규정에 따라 예산을 이월 할 때에는 그 이월하는 과목 별 금액은 이월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본다.[전문개정 2011. 8. 4.]

「지방회계법 시행령」

[시행 2022. 1. 13.] [대통령령 제32223호, 2021. 12. 16., 타법개정]

- 제10조(결산서 등의 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법 제14조에 따라 작성한 결산서에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 전단에 따른 감사위원(이하 “감사위원”이라 한다)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16.>
-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에 따라 결산서와 감사의견서를 받은 경우 받은 날 부터 7일 이내에 감사의견서와 감사위원의 성명을 지방의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